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(약칭: 스토킹방지법 시행령)



[시행 2023. 7. 18.] [대통령령 제33631호, 2023. 7. 11., 제정]

여성가족부 (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) 02-2100-6427

- **제1조(목적)** 이 영은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스토킹 실태조사) ①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4조제1항에 따른 스토킹에 대한 실태조사(이하 이 조에서 "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성별, 나이, 거주지역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
 - 2. 스토킹의 발생 원인 및 배경
 - 3. 스토킹의 유형, 특성 및 빈도
 - 4. 온라인 활동 증대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스토킹 현황 및 변화 추세
 - 5. 그 밖에 스토킹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 -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스토킹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·장비를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- **제3조(스토킹 예방교육 등)** ① 법 제5조제1항 본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1. 「고등교육법」제2조 각 호의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・운영되는 이에 준하는 학교
 - 2. 「공직자윤리법 시행령」제3조의2제2항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·단체(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공직유관단체에서 제외된 것으로 보는 기관·단체는 제외한다)
 - ② 법 제5조제3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1.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
 - 2. 「지방공기업법」제78조제1항에 따라 경영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방공기업
 - ③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을 마련하는 경우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 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제1항에 따른 자체 예방지침과 통합하여 마련할 수 있다.
 - ④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- 1. 스토킹 사건 처리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
 - 2. 스토킹 방지 조치 및 스토킹 예방교육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
 - 3. 법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또는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마련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
 - 4. 그 밖에 해당 기관 내 스토킹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⑤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공공단체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·시행하는 경우 스토킹이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성폭력 또는「양성평등기본법」에 따른 성희롱과 결합된 사건인 경우에는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 및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31조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과 통합하여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- 제4조(피해자등의 취학 지원)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(이하 "피해자등"이라 한다)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취학(입학・재입학・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시키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- 1. 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
 - 가. 피해자등의 보호자가 피해자등을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에 입학시키려는 경우 해당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입학을 승낙해야 한다.
 - 나. 피해자등이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경우 그 초등학교의 장은 피해자등의 보호자 1명의 동의를 받아 교육장에게 그 피해자등의 전학을 추천해야 하고, 교육장은 전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전학하게 해야 한다.
- 2.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각급 학교
 -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피해자등이 다른 학교로 재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할 수 있도록 추천해야 하고,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재입학·전학 또는 편입학할 학교를 지정하여 배정해야 한다.
- ②「초・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,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항 각호에 따라 조치한 사실이 취학 업무 관계자가 아닌 사람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관리・감독해야 한다.
- ③ 제1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취학에 걸린 기간은 피해자등의 출석일수에 산입한다.
- 제5조(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· 운영 기준)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피해자 지원시설(이하 "지원시설"이라 한다)의 설치 · 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- **제6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 업무의 위탁)** 법 제8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 - 1. 정부출연기관
 - 2.「지방자치단체 출자・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5조에 따라 지정・고시된 출연기관
 - 3. 다음 각 목의 법인이나 단체
 - 가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4조의6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·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
 - 나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5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의 설치·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
 - 다.「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7조제2항에 따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
 - 라.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10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·운영을 신고한 법인이나 단체
 - 마. 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제12조제2항에 따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을 설치·운영하는 법인이나 단체
 - 4. 「민법」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주된 업무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
- 제7조(지원시설의 업무) 법 제9조제1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"란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·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시설과의 협력 업무를 말한다.
- **제8조(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)** 법 제10조제2항에서 "전문 지식이나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"이 란 별표 2에 따른 자격기준을 말한다.
- **제9조(교육의 실시)**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지원시설의 장 및 상담원에 대하여 연간 8시간 이상 20시간 이하로 실시해야 한다. 이 경우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강의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.
 - 1. 스토킹의 유형, 특징 및 주요 내용
 - 2. 스토킹 관련 법령의 이해
 - 3. 피해자등에 대한 의료·주거·법률상담 등의 지원 체계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4. 피해자등에 대한「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및 「양성평등기본법」등 관련 법령에 따른 지원 과의 통합지원 및 연계에 관한 사항
- 5. 피해자등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과 상담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피해자등을 보호 ㆍ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
- ③ 법 제11조제2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"이란「양성평등기본법」제46조의2에 따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말한다.
- 제10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국가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(해당 권한이 위임·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·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 또는 지원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 - 1. 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피해자에 대한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무
 - 2. 법 제7조에 따른 취학 지원에 관한 사무
 - 3. 법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지원시설의 업무에 관한 사무
 - 4. 법 제10조 및 이 영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에 관한 사무
 - ② 지원시설의 장은 법 제9조제5호에 따른 의료 지원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「개인정보 보호법」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
- 제11조(규제의 재검토) 여성가족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 - 1.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
 - 2. 제8조 및 별표 2에 따른 지원시설 종사자 등의 자격기준
 - 3. 제9조에 따른 교육의 시간, 방법 및 내용

제12조(과태료의 부과기준)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
부칙 <제33631호,2023. 7. 11.>

이 영은 2023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